

제대혈 []기증
[]위탁 동의서

기증자 (위탁자)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연락처	전화번호	이동전화번호
	주 소		
	출산 예정일		출산 예정 병원

본인은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대혈([]기증 []위탁)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, 제대혈([]기증 []위탁)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기증자(위탁자)

(서명 또는 인)

〇〇〇 제대혈은행의 장 귀하

유의사항

- 제대혈 기증 또는 위탁 동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제대혈은행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(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).
-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모는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기증 또는 위탁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제대혈 기증 또는 위탁에 동의하는 산모께서는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제대혈은행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동의서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의 목적에 관한 사항
 - 나. 제대혈 채취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
 - 다. 제대혈 보존기간,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
 - 라. 제대혈기증자, 제대혈을 위탁하는 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
 - 마. 제대혈기증, 제대혈위탁의 철회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
 - 바.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
 - 사. 제대혈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항목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
 - 아. 제대혈이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
 - 자. 제대혈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
 - 차. 제대혈은행이 폐업·휴업하거나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
- 가족제대혈을 위탁하려는 산모께서는 위탁 계약(약정)을 맺을 때에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,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－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에 따르면, 가족제대혈의 보관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제대혈제제는 폐기, 보관기간 연장 또는 기증제대혈제제로의 전환 중 하나를 택하여 처리하게 됩니다. 이 경우, 해당 제대혈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(약정)을 할 때에는 보관기간이 끝날 시기에 제대혈은행과 위탁자 간의 연락이 끊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제대혈은행과 충분히 상담한 후 계약(약정)하시기 바랍니다.

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가족제대혈의 폐기 등) ① (생 략)

② 가족제대혈은행은 가족제대혈의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족제대혈을 위탁할 때 약정이 있거나 제대혈위탁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대혈제제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제대혈제제를 기증제대혈제제로 전환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